

FTC,

## 심의절차 개선 위해 절차규칙 개정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8월 15일 사건의 처리속도를 높이고, 심의절차(Adjudicative Process)를 효율화하기 위해 「관련규칙(Rules of Practice Part 3)」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칙은 FTC의 사건처리를 위한 심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동 개정작업은 2009년 4월 27일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보완 작업의 일환이다.

기업들은 이전부터 FTC의 심사가 연방지방법원보다 더 오래 걸리고, 증거 제출 등 부담되는 절차가 과다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규정의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증거개시(Discovery)<sup>1)</sup>는 행정심판관(Administrative Law Judge)이 심의일정(Scheduling Order)을 확정한 후 개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3.31).

피심인이 행정소장(Administrative Complaint)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관이 FTC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종합해 심의일정을 확정·통지하게 되고, 증거개시는 그 이후부터 개시된다.

이전에는 증거개시방법만 규정되어, 최대한 빨리 심사관의 증거를 파악하려는 피심인과 증거 노출을 늦추려는 심사관 사이에 갈등이 야기된 적이 빈번했다.

두 번째로 과중한 증거개시로부터의 제3자 보호영역을 확대했다(§3.31).

제3자가 보유한 전자적 자료가 방대하고 복잡해 제출에 지나친 비용이 들 경우, 증거개시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세 번째로 기업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밀보호명령 표준양식을 변경했다(§3.31Appendix)

비밀정보의 정의를 '비밀서류 중 발췌 정보'에서 '제출된 서류 중 실질적(Substantive)으로 비밀인 내용을 포함한 모든 서류'로 개정해 비밀보호를 강화했다.

네 번째로 전문가에 대한 증거개시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추가했다(§3.43).

객관성이 결여된 피심인·심사관측 전문가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전문가를 증거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변호

사와 전문가 간의 의사교환도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증거개시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섯 번째로 전문가 증언·보고서 등의 증거채택요건을 강화했다(§3.43).

다른 절차에서 제시된 증언(전문가증언포함)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불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심판관이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간 위원회나 피심인이 참여하지 않은 절차에서의 증언을 모두 증거로 채택할 수 있어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여섯 번째로 심의절차를 영상녹화하는 의무를 폐지했다(§3.44). 증언과정을 모두 녹화하는 비용이 그를 통해 얻는 실익보다 크다고 판단,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녹화하도록 개정했다.

참고로 FTC는 2009년 심의 중 증언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 심의과정 녹화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일곱 번째로 비밀문서와 공개문서를 확실히 구분하도록 했다(§3.45).

비공개문서의 매 페이지마다 비공개 표시를 의무화해 부주의로 인한 외부 유출을 방지했다.

여덟 번째로 위원회가 구두변론일(Oral Argument)을 명확히 정하도록 규정했다(§3.52).

이제부터 위원회는 구두변론이 필요할 경우, 준비서면 제출기한 또는 이의제기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이전에는 위원회가 구두변론 개최 여부를 언급하지 않거나 개최일을 확정하지 않아 피심인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예외결정이 없는 한, 공포일 이후 접수된 사건과 진행 중인 사건 모두에 적용될 예정이다.

1) 재판 준비단계에서 당사자끼리 서로의 증거자료를 검토하도록 해 합의를 권장하고 방어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로, 서면질의 사본 요구, 대면질의의 방법을 사용한다.

## FTC, 변형된 역지불합의 제재 방침 발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8월 31일, Authorized Generics(AG)<sup>2)</sup>가 '제약시장의 장·단기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Authorized Generic Drug : Short Term Effects and Long Term Impact)를 발표했다. 라이보위츠(Leibowitz) 위원장은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역지불합의과정에서 AG출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제약사의 Authorized Generics 출시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특히 제약사가 Authorized Generics를 복제약의 진입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는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간 관련 업계에서는 Authorized Generics가 경쟁을 촉진하고 약값을 인하하는 효과를 강조하는 견해와 특히 제약사의 Authorized Generics 출시가 복제약 제조사의 수익을 악화시켜 시장 진입유인을 축소한다고 비판해 온 견해가 대립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Authorized Generics가 출시될 경우, 다른 복제약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약값 인하를 유도한다고 분석하였다.

미국 FDA와 민간제약기구인 IMS Health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2003~2008년), Authorized Generics와 경쟁한 복제약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소매가격은 4~8% 인하됐고, 도매가격은 7~14% 인하됐다.

또한 Authorized Generics의 존재가 복제약 제조사의 기대수익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복제약의 시장 출시를 제한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Authorized Generics가 없을 때보다 복제약 제조사의 수익이 평균적으로(30개월간) 53~62% 정도 낮아지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복제약 출시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기대수익이 큰 것으로 나타나 시장 진입의 유인은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특히약 제조사가 Authorized Generics 출시 여부를 복제약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레버리지 (Leverage)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도 제기됐다.

역지불합의과정에서 오리지널약 제조사는 복제약을 출시할 경우, Authorized Generics 생산을 개시하겠다고 암박해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오리지널 약값이 인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아울러 복제약 출시를 지연할 경우, Authorized Generics 생산을 장기간 유보한다는 조건도 제시해 복제약 제조사의 합의유인을 증폭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 경우, 복제약 시판 이후의 가격경쟁을 약화시켜 소비자 후생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 이렇듯 논란이 분분한 역지불합의와 관련해 강경대응방침을 밝힌 FTC와는 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아직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방항소법원의 경우, 담합으로 보는 견해와 특히권의 본질인 배타성을 넘는 경쟁제한성이 있어야만 위법이라는 견해가 대립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역지불합의에 대한 FTC와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의 협력을 받아 출시되는 복제의약품으로, 특히 만료 후에 복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DOJ,

## AT&T와 T-Mobile 기업결합에 제동

미국 법무부(DOJ)는 8월 31일, 가입자 기준 미국내 2위와 4위 기업<sup>3)</sup>인 AT&T와 T-Mobile의 기업결합을 저지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동 기업결합과 관련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 반독점협회(AAI)는 DOJ에 제출한 보고서<sup>4)</sup>를 통해 동 결합이 심각한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하여 클레이튼법 제7조에 위반된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이다.

우선 AT&T와 T-Mobile의 기업결합시 경쟁기업 수의 감소로 시장집중도가 더욱 심화되게 된다. 현재 통신시장은 AT&T가 Verizon과 함께 65%의 가입자를 점유 중이며, 아이폰 독점공급과 최다 주파수 확보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상황이다. 그리고 기업결합 후 AT&T는 42%의 시장점유율로 1위 기업이 되며, Verizon과 함께 75%의 가입자와 78%의 수익을 차지하게 된다.

시장획정의 경우, 소비자는 지역별로 구분되지만 전국망통신 기업간 경쟁은 전국적이므로, 관련 지리적 시장은 전국·지역 모두에 해당한다. AT&T는 경쟁제한효과 축소를 위해 관련 지리적 시장이 각각의 지역이며 다수의 로컬(Local) 통신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통신사는 전국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T-Mobile 만큼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없다. 참고로 DOJ는 통신회사인 Sprint와 MCI 결합을 금지한 사건(1999)에서, 지역통신사들이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네트워크 의존성 등으로 메이저(Major) 통신사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저지할 여건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시장집중도의 경우, 주요 경쟁기업 수가 4개에서 3개로 감소되어 시장집중도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해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시장집중도가 높아도 진입·퇴출이 자유로우면 효과적 경쟁이 가능하지만, 무선통신시장은 규제적·기술적 측면에서 경직적이어서 진입·퇴출이 쉽지 않다.

두 번째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선 단독효과를 꼽을 수 있다. AT&T와 T-Mobile만 GSM 방식(유럽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동통신방식으로 CDMA와 대별됨)을 사용하고 있어, 기업결합 후 가격 인상시 가입자의 사업자 전환<sup>5)</sup>이 제한되어 단독효과 가능성 이 높아지게 된다.

협조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T-Mobile은 시장내 독행기업(Maverick Firm)으로서 선도기업을 지극해왔고, 최초로 안드로이드 폰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sup>6)</sup> 행태를 보였던 바, 동 결합은 기업간 협조효과 가능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경쟁자 배제행위와 관련,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입자 수 확대로 AT&T가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경쟁자 배제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단말기 선점 및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거래조건 제시 등이 우려된다.

세 번째로, Verizon을 제외한 경쟁기업들도 경쟁제한적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결합회사의 가격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반사적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집중으로 인해 중견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1위 기업 Verizon은 오히려 안정적인 가격정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주가(株價)가 상승하는 등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이다.

네 번째로, 보고서에 따르면 동 기업결합이 네트워크망·주파수 용량(Capacity) 확대 등으로 효율성을 증가시켜 가격인하를 가능하게 한다는 AT&T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AT&T는 가장 많은 주파수를 확보 중이며, T-Mobile도 주파수 확보분량이 충분하다고 언급해왔다. 또한 AT&T는 네트워크 용량 확대 등이 기업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이익인지를 입증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기지국 업그레이드 및 증설을 통해 동일한 효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설령 네트워크·주파수 효율성이 증가했더라도, 이것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효율성 증가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Upgrade)에 사용될 투자비용을 절감한 것에 국한되고, 오히려 경쟁을 통해 촉진될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신기술 개발유인은 큰 폭으로 감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고정비용의 절감이 경쟁의 감소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규모의 경제에서 네트워크·단말기 등의 단독공급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비용 절감과 가격혁신 지속 등 경쟁 속에서 산출되는 동태적 효율성의 희생이 더 큰 비용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AT&T가 제시한 39억 달러의 시너지 창출효과는 단순한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에 지나지 않으며, 가입자 유치비용·광고비용 감축 및 대리점 축소 등을 오히려 반경쟁적인 효과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규제정책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장집중도가 높은 상황에서 주파수나 시설을 다른 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요금 동결 또한 상품 및 서비스의 질(質), 기업간 경쟁 감소 등 정작 중요한 요소에 대한 고려를 간과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현재 미국의 이동통신시장내 공룡기업을 탄생시키게 되는 이번 기업결합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DOJ가 합의를 위한 레버리지로 소송을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높은 시장집중도 속에서 시정조치 등이 쉽지 않은 가운데 향후 진행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 Verizon(1위), AT&T(2위), Sprint Nextel(3위), T-Mobile(4위)

4) The Effect of AT&T's Acquisition of T-Mobile Is Likely To Substantially Lessen Competition(A White Paper of the AAI, 8.17, 2011)

5) GSM 방식의 경우, 동일한 휴대폰 기기를 이용하면서 U-SIM 카드만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를 전환할 수 있다.

6) 블랙베리 무선이메일, Sidekick, WiFi Hotspot Access, 무제한 서비스 플랜 등을 최초로 도입하거나 시도했다.

## EU 집행위원회, HDD 분야 기업결합심사 동향

EU 집행위원회 최근 2건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분야 기업결합 건(2건)<sup>7)</sup>을 심사 중이며, 5월 30일 상기 두 기업결합 건에 대해 각각 2단계 심층조사<sup>8)</sup>(Phase II investigation)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심층조사 후 웨스턴디지털에는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를 발송하고, 시게이트에는 발송하지 않았다.

이에 동일한 관련 시장에서 복수의 기업결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시장점유율 산정 등의 경쟁제한성 판단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웨스턴디지털보다 하루 일찍 신고한 시게이트에 대해 실무적으로 '우선심사지위'(Sequencing Issue)를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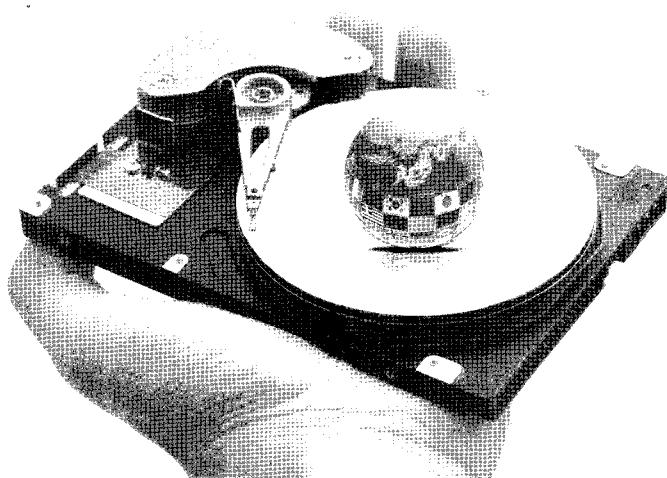
따라서 시게이트 건은 웨스턴디지털의 기업결합이 없다는 전제에서 심사하고, 웨스턴디지털 건은 시게이트 기업결합이 완료됐다는 전제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경우 두 건의 관련 시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게 된다.

- 시게이트 건 : 시게이트+삼성전자(41%), 웨스턴디지털(32%), 히타치(16%), 도시바(11%)
- 웨스턴디지털 건 : 웨스턴디지털+히타치(48%), 시게이트+삼성전자(41%), 도시바(11%)

이에 대해 웨스턴디지털은 EU 경쟁총국의 실무적인 판단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크게 반발하며, 8월 8일 EU 법원(General Court)에 제소했다.

향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이와 같은 우선심사지위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 웨스턴디지털(미국)의 히타치(일본) HDD 사업부문 인수 건(43억 달러 규모) : 4월 19일 신고.

8) 1단계 심사 결과, 경쟁상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실시한다.

## 핀란드,

# 경쟁당국의 법집행권한 강화한 경쟁법 발효 예정

핀란드의 개정된 경쟁법(Act on Competition Restrictions)이 8월 12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EU 경쟁법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이번 개정을 통해 핀란드 경쟁당국(FCA: Finnish Competition Authority)의 법집행권한도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의 '시장지배력 기준' (Dominance Test)에서 '유효한 경쟁에 대한 심각한 방해 기준' (Significant Impediment of Effective Competition test: SIEC Test)\*으로 전환했다. 즉, 심각한 경쟁제한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 근거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시장지배력 기준은 보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U도 2004년 기업결합규정을 개정해 SIEC Test를 도입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리니언시 제도를 개정했다.

2순위와 3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경감혜택을 명확화 함으로써{20~30%(2순위), 20% 이하(3순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세 번째로, 조사권한을 강화했다.

FCA에게 사유지(임원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기습현장조사(Dawn Raids)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네 번째로, 사건처리권한을 강화했다.

FCA에게 모든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근거가 불충분한 신고는 기각하고,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중요한 사건의 조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FCA가 변화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 Dominance Test VS SIEC Test (SLC Test; Substantive Lessening of Competition)

	Dominance Test	SLC Test = SIEC Test
정의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결합으로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경우, 경쟁제한적 효과가 있다고 봄</li> <li>시장획정과 시장점유율 등 구조적 측면을 중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결합으로 시장에서 가격 인상, 생산 감축 등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쟁제한적 효과가 있다고 봄</li> <li>시장에 대한 정밀한 경제분석에 중점을 둠</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적 예측성 측면에서 우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질적으로 경쟁제한적 효과가 있는 기업결합을 제재하는 데 탁월</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재할 수 없는 'Gap'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제한적 판단기준이 모호함</li> </ul>
적용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EC, 호주 등 대부분 국가</li> </ul>

## 브라질, 기업결합심사제도 전면적 쇄신

현재 브라질 하원(Chamber of Deputies)에 상정된 기업 결합심사제도 전면 개정안은 브라질 경쟁법 집행 강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도 올해 초 취임연설에서 경제정책의 중점과제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강조한 바 있다.

브라질은 2008년 이후 금융위기로부터 유독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고,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M&A건 수와 규모는 꾸준한 증가<sup>9)</sup>주세다.

그러나 1994년 제정된 경쟁법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업결합의 효율적 처리에 한계점을 노정(路程)했다.

특히 사후 제제와 다원적 집행구조, 신고요건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가 됐다.

우선 완료된 M&A에 대한 사후 제재는 기업에게는 큰 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쟁당국의 신속하고 다양한 정책결정을 제한해 왔다.

기업결합 완료 후 자산·조직 등이 재구조화된 상황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게는 막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였다.

그 결과, 경쟁당국도 결합금지를 결정하기가 곤란<sup>10)</sup>하게 되며, 자산이나 주식 처분 등 구조적 조치(Structural Remedies)도 기업결합 완료 시에 적용이 어려워 제재가 행태적 조치(Behavioral Remedies)에 한정됐다.

또한 경쟁당국의 결정이 M&A 성부(成否)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아 신속한 심사에 대한 유인이 감소해, 결합심사절차의 형해화(形骸化)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리고 다원적 집행구조도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었다.

현재 3개 기관이 관여<sup>11)</sup>하고 있는데, CADE는 자체적 분석 외에도 SDE와 SEAE의 검토보고서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기업들은 각 기관의 중복된 조사 및 요청을 감내해야 하며, 각 기관별로 심사기한이 달라 결합심사일정이 불확실해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신고요건의 불명확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고요건\*중에서 결합 후 시장점유율에 관한 규정이 비즈

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주된 이유가 되어,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계산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지침이 부재해 시장점유율 측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주요 원인이었다.

이런 결과로 기업들이 유리한 상품시장 확장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도록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다.

### \*신고요건

- ① 브라질 내에 결합에 따른 영향이 있어야 함
- ② 결합 결과,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이 될 경우
- ③ 직접회계연도 매출이 4억 달러 이상일 경우

개정안의 내용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문제점을 전면 수정했다.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CADE가 승인하거나 법정심사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결합을 완료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사전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어 기업들의 위험부담이 줄어들고, 경쟁당국은 신속한 심사 및 구조적 조치(Structural Remedies) 등 정책수단의 폭을 확대했다.

또한 모든 조사·심사·결정권한을 CADE로 집중시키고 담당부서로 Superintendency General이 수장인 General Bureau 신설했는데, CADE는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을 예정이다.

증복조사에 따른 불편과 3개의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져 당국과 기업 모두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신고요건 역시 브라질내 매출이 인수기업은 총 10억 달러 이상, 피인수기업은 4,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로 상향하고 단순화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의무에서 면제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며, 의무적 신고요건도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9) 386건(2005년) → 411건(2006년) → 591건(2007년) → 640건(2010년)

10) 2004~2009년 사이 결합심사가 신청된 2,826건 중 3건만 미승인됐다.

11) CADE(Conselho Administrativo de Defesa Econômica, 경제보호위원회 : 독립기관), SDE(Secretaria de Direito Econômico, 경제검찰-법무부 소속), SEAE(Secretaria de Acompanhamento Econômico, 경제분석청-경제부 소속)



## 중국 상무부, M&A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규정(초안) 마련

중국 공상총국(SAIC)은 허위안시(河源市) 당국이 지역내 사업자에게 특정 GPS업체와 거래를 강요한 행위를 행정권 남용행위로 판단하고, 반독점법에 근거해 상급기관인 광동성에 제재할 것을 건의했다. 이런 건의에 대해 광동성은 6월 12일, 최종적으로 동 위반행위를 철회할 것을 명령했다.

### 〈 적용 법조 : 반독점법 관련 규정 〉

- 제8조 :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의 수권에 의하여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 :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수권한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그가 지정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단위나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구매,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을 통하여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상총국이 지방정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제재를 건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허위안시는 자동차 GPS 제조업체인 NST사를 지역내 공식적인 자동차 통행·교통정보 플랫폼업체로 지정하고, 다른 GPS 업체가 NST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NST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년 시(市) 교통·경찰부서에서 실시하는 의무적인 자동차 검사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공상총국은 동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상급기관인 광동성에 위법 행위를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 \*법적 근거

행정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상급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하고, 상급기관이 행위를 시정하도록 규정(반독점법 제51조)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공상총국이 반독점법 도입(2008년 8월 1일) 이후 행정권 남용에 대해 제재를 건의한 첫 번째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

향후 행정권 남용행위에 대해 공상총국의 법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